##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발의일 : 2021. 11.

## 1. 제안이유

○ 골목상권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를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와 상인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골목상권 육성구역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마. 골목상권 육성구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바. 골목상권 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사.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2조)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골목길 상권은 일반적인 상권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, 대부분 도시 중심부의 대형 중심상권이나, 주요 권역의 거점에 위치하지 않으며, 기존 상권에 연접해 있으며 주거공간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여건이 기타 상권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의 방문 측면에서 취약한 특징이 있는 지역으로,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